the 300

['시행령 공화국' 탐사리포트 ①]세월호 두달…시행령 등 법령 무력화 '하극상' 국가 근간 위협

'법 위의 시행령', 세월호 · 관피아 낳았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시행령 등 행정입법 관련 규정

	현행 국회법	민병두 의원 국회법 개정안
소관 부처	시행령 등 개정시 10일내 상임위 보고	시행령 등 개정시 10일내 상임위 보고
국회 상임위	법률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처에 통보	법률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처에 시정요구
소관 부처	처리 결과 상임위에 지체없이 보고	처리 결과 상임위에 3개월내 보고
국회		3개월 내 처리 결과 보고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 효력상실

정확히 두달 전 침몰한 '세월호'. 이 배에 운항 허가를 내줬던 한국해운조합의 이인수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에서 본부장까지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은 원칙적으로 퇴직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이익 · 협력 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업계와 정부의 과도한 '유착'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이같은 법률의 취지를 전면 무력화시켰다.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에는 취업을 허용한다고 쓰여 있다. 갓 퇴직한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해운조합 이사장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이유다.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유착과 '봐주기'식 관리가 불러온 '세월호'의 비극은 그렇게 잉태됐다.

시행령, 고시, 지침 등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배반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하나로 68시간까지 늘어났다. 또 화장품법이 화장품 포장에 가격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곤란한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률을 뒤엎고 있다.

국민에 의해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의 법률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행정부에 의해 번번이 무력화 또는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노회한 관료들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두고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법률 위배되는 행정입법, 무력화"

이에 국회가 '반격'에 나섰다.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행정입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부처 장관에게 3개월 내 시정과 처리경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또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서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현행 국회법 제98조2항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훈령, 고시 등을 제 ·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10일내 국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는 만약 이 행정입법들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지체없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회로서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없다. 헌법 107조는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지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수 있지만, 이는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률에 배치되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재판 이전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셈이다.

◇ 의원들 "시행령 견제 전폭 지지" vs "신중해야"

이처럼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해 야당 지도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당 지도부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 소속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말도 안되는 시행령이 나와서 '대응입법'을 2~3차례나 직접 낸적이 있다"며 "이런 행정입법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취지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운영위가 열리면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이 너무 구체적이면 현실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등은 현실을 고려해 마련하도록 정부에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시행령 등 정부의 고유한 행정입법까지 국회가 견제한다면 권한이 국회로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연방의회가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다. 행정부는 시행 60일 전에 의회에 행정입법안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의회가 거부하면 시행할 수 없다. 독일은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동의권 뿐 아니라 수정권과 폐지권까지 갖고 있다. 영국은 일부 행정입법에 대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가 행정입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시행령 공화국' 탐사리포트 ②] 직장 여성 김나리씨, 가상의 하루

'행정지침'이 뺏아간 전국민 '칼퇴근'

머니투데이 이상배, 이미호, 이현수 기자

김나리씨의 하루

현황 문제점

05:20 "막내야, 이 새벽에 나가?"

편의점 점주가 원치 않아도 오전 6시에는 반드시 편의점을 열어야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편의점 등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개정.
시행령: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개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심야 자율영업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입법예고했으나 결국 오전 1~6시로 단축된 채 시행령 개정.

07:40 "혹시 타르색소 들어간 거 아닐까?"

아이섀도, 립스틱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블러셔(볼터치용) 등 다른 색조화장품에는 허용됨.

화장품법: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 판매를 금지.
식약처장 지정 · 고시: 법 취지와 달리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등 외에는 타르색소 사용을 사실상 허용.

08:10 "차 바꿔야 하는데"

환경부의 저탄소차협력금 보조금 · 부담금 기준상 그랜저를 사면 300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BMW i3를 사면 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음.

대기환경보전법: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차 등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는 취지로 개정.
환경부 보조금 · 부담금 기준: 연비 기술이 뛰어난 외제차는 수백만원 싸지고, 국산차는 수백만원 비싸짐.

10:20 "대기업 등쌀에 또…"

대기업의 면세점 입점에 대해 면적이 아닌 점포수로 규제. 중견기업 면세점, 규모에서 열위

관세법: 대기업 면세점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당초 '면적'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 '점포'(특허) 수 기준으로 개정해 사실상 대기업의 면세점 규모 확장 허용.

12:50 "가격이 도대체 얼마야?"

주요 숍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가격표시 없음. 소비자들은 진열대에 붙은 택(tag)만 보고 가격을 가늠해야 해 세일 중인지 아닌지 확인 어려움.

화장품법: 포장에 반드시 가격을 표시토록 규정.
식약처장 고시: '곤란한 경우'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18:40 "오늘도 야근"

현행 법상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라 사실상 최대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음.

근로기준법: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제한토록 개정.
고용부 행정지침: 노사합의시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주말근로시간 16시간 추가 허용.

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이런 위계질서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고시, 지침 등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의 '법률'을 거스르고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행정독재' 또는 '법령의 하극상'으로 불리는 이 같은 사례들을 가상의 한 직장 여성의 하루를 통해 살펴본다.

오전 5시20분, 김나리씨(26 · 여)는 마루에서 부스럭대는 소리에 잠을 깼다. 마루에선 막내동생이 이미 옷을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 어디 가?" "응 편의점 알바 오늘부터 시작이잖아"

동생이 군 제대 후 복학 전까지 잠시만 하겠다던 아르바이트다. 하지만 새벽부터 나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그런데 벌써 나가?" "응 새벽 6시에는 문 열어야 한대"

집을 나서는 동생을 보며 나리씨는 궁금해졌다. "편의점을 새벽 6시에 열어 그 시간에 한시간 더 팔아봐야 인건비 빼고 얼마나 남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 점주가 원치 않더라도 오전 6시에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때문이다.

당초 법률은 편의점 등 가맹(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전 1~7시에는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결국은 오전 6시에는 반드시 문을 열도록 하는 내용으로 후퇴한 채 지난 2월 시행령이 개정됐다.

오전 7시40분, 출근을 위해 기초화장을 마친 나리씨가 마지막으로 분홍색 블러셔(볼터치)를 꺼내들었다. 톡톡 두드리듯 바르니 양 볼이 금세 붉게 물들었다.

분홍 색감 덕에 얼굴이 화사해졌지만 마음 한켠으론 찜찜하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본 기사 때문이다. "타르색소가 화장품에도 들어있다는데…. 이 볼터치도?". 갑자기 타르가 양 볼에 스며드는 느낌이다.

타르색소는 석탄타르를 원료로 합성한 색소다. 우리나라는 화장품에 타르색소를 넣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은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원료가 무엇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적색 205호' 등 18종의 타르색소는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돼 있다. 눈 주의나 입술이 아닌 볼에 쓰는 볼터치 등은 피부에 그대로 스며드는 화장품임에도 타르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셈이다.

오전 8시 10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르릉~" 나리씨가 출근을 위해 자가용에 시동을 걸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15년 된 차다. "내년쯤에는 새 차를 사야 하는데 · · · ". 당장은 돈도 없고, 할부이자도 만만치 않아 새 차를 사려면 내년까지는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한가지가 걱정이다. 바로 '저탄소차 협력금'이다. 주머니 사정상 외제차는 사기 어렵고 국산차를 사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국산차를 살 때 최대 수백만원의 탄소부담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그런데 환경부가 시행을 위해 내놓은 기준은 '외제차' 구입을 장려하고 '국산차' 구입은 어렵게 하고 있다. 독일 등 외국의 저탄소 차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환경부 기준이 시행되면 기아 쏘울을 살 때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BMW i3를 사면 7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오전 10시20분. "아이구…". 중견기업 면세점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나리씨의 귓가에 부장님의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천신만고 끝에 최근 시내에 면세점을 열었는데, 인근 대기업 면세점이 규모를 3배로 확장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당초 인근 대기업 면세점의 규모가 작아 승부해볼만 하다고 보고 개점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대기업들 등살에 도저히 배겨낼 수가 없구만". 한숨만 내쉬던 부장님은 결국 담배를 꺼내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대기업 면세점의 '무한확장'을 막기 위해 2012년 관세법이 개정될 때 당초 규제 기준은 '면적'이었다. 면적을 묶어두면 당연히 신규 개점 뿐 아니라 확장까지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시행령에서 갑자기 기준이 '면적'이 아닌 '점포수'로 바뀌었다. 대기업 면세점의 점포별 확장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중견기업 면세점들은 규모 면에서 밀릴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오후 12시50분, 서둘러 점심을 먹은 나리씨가 화장품 가게로 향했다. '타르색소 무첨가' 립스틱을 사려고 진열대를 살피는데 '30% 세일'이라고 적힌 제품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손에 쥐어든 나리씨. 하지만 이내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진짜 할인 중일까? 가게 마음대로 써놓고 세일이라 속여도 알 길이 없는데…". 립스틱 용기를 살펴봐도, 포장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가격 표시는 없다. 매장 진열대에 붙은 가격 택(tag)이 전부다.

국내 상당수 화장품 브랜드숍들은 화장품 가격을 해당 진열대에만 표시하고 있다. 가격 스티커가 부착된 경우도 있지만, 상점이 임의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확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판매자가 화장품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곤란한 경우'에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

오후 6시40분, "자 다들 저녁 먹고 하지". 부장이 부원들을 인솔(?)해 구내식당으로 향한다. 나리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이다. '칼퇴근'이란 말은 잊은지 오래다. 분명 입사할때는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6시'라고 들었는데 · · · .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2003년 8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보다 가까운 '고용부 행정지침'에는 노사합의시 평일 12시간, 주말 · 휴일 16시간을 더해 총 최대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용부가 2000년 9월 현장에 내려보낸 지침이 법률 개정 이후에도 버젓이 통용되며 전국민의 '저녁'과 '주말'을 앗아가고 있다.

행정부 '시행령' 횡포, '선출된 권력'이 막는다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주요 선진국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국가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미국	행정부, 시행 60일 전에 의회에 행정입법안 제출 의무 의회, 행정부 행정입법에 대해 거부권 보유
영국	의회, 일부 행정입법에 대한 승인권 보유 의회, 의결을 통해 행정입법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 보유
독일	연방의회, 행정입법에 동의권 수정권 폐지권 보유

미국 · 영국 등 의회 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 임명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한을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제어하는 것이다.

행정입법은 현대 국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행정이 복잡 · 전문화되며 법률이 담지 못하는 규율을 행정권이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가 오래 걸리는 법률로는 사회 · 경제 · 문화 등 행정대상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입법의 권한이 커지면 시행령이나 법규명령을 행정 편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수시로 행정입법 사안을 개정해 법치주의에 혼란 줄 수도 있다. 행정입법 권한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의 통제가 필요한 지점이다.

우리나라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입법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고 상임위는 이를 검토해 위법사항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국회의 권한이 통보에 있고 수정 ·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은 '의회심사법'에 의해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다. 1996년 클린턴 정부 시절 제정된 이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대부분의 규칙은 의회가 심사해 행정입법 통제 대상이다.

미국의 모든 행정위원회는 행정입법 시행 60일 이전에 연방의회와 연방의회 회계감사원에 행정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계감사원이 행정입법 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상 · 하원 공동의 결의에 따라 규칙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입법 재 · 개정 및 폐지 시 10일 이내에만 상임위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되고, 상임위의 거부 권한도 없는 우리 국회법보다 훨씬 엄격하다.

영국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위임한 개별 수권법률에서 행정입법을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미국처럼 일반법을 만들어 큰 틀에서 통제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통제 형태는 정지조건부(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따라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행정법안이 제출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행정기관이 즉각 효력을 발하는 행정법안을 제정할 시에는 법안 제출 40일 이내에 상 · 하원 중 한 쪽의 의결에 의해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독일 역시 행정입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원 격인 독일 연방의회는 행정입법에 대해 동의권 · 수정권 · 폐지권 등을 갖고 있다. 특히 연방의회는 재정 및 경제분야의 행정입법에 대한 관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는 행정입법을 제정할 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행정입법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가 의결하면 행정입법 내용을 수정 · 폐지할 수도 있다. "법규명령은 공포 전에 연방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명령은 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또는 거부될 수 있다"는 독일 상법 제292조 제4항이 대표 사례다.

['시행령공화국' 탐사리포트④]"시행령 왕국?" 정부의 변명은...

화장품 가격 표시, 왜 찾기 힘들까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법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정부 관계자들은 시행령 권한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개를 젓는다. 법률을 구체화한 결과가 시행령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한 남용' 성격이 짙어 입법 취지거스르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시행령은 시행을 위해 필요"
시행령이 법을 왜곡하는 대표적 예로는 화장품 가격표시제를 들 수 있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가격표시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러나 법이 위임한 총리령, 총리령이 재위임한 시행규칙, 시행규칙이 다시 위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가격부착이 곤란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판매가를 별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은 개별상품에 붙여야 한다"면서도 "홈쇼핑에서 가격 등을 제시했는데 다시 제품별로 가격을 붙여야한다든지, 대형마트 진열대에 가격정보를 표시했는데 일일이 다시 제품별로 붙여야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은 원래 다르다"며 "법이 너무 구체적이면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시행령은 말 그대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의 위임을 받아 예외적인 조항을 고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판단에 따른 것"
법이 총리령으로 구체적 방법을 위임한 화장품법의 경우처럼, 일각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에 행정입법 권한을 많이 주면서 스스로 입지를 축소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과실 경우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금융회사가 시행령을 바탕으로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 조건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 결정에 따라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지 감안해서 입법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특별한 경우, 고의성, 중대과실…→법률용어"
모호한 법률 용어가 시행령의 권한을 더 확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특별한 경우 △고의 · 반복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등의 말이 자의적 해석 소지를 키운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고의라는 용어는 특정한 법률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에서 나오는 용어"라며 "법에서 명시한 사례들이 많지 않아 '고의'와 관련해선 따로 예시를 정해뒀다"고 설명했다.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경고 ·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셈이다.

[the300]본회의 의결로 시행령 무력화, '과잉입법' 논란도.."의원들부터 반성"

"시행령 남용 막아야"...여 · 야 한 목소리...방법론은 이견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원안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의원들 견해는…

여야 공감	개선 방법	단점 및 한계
"국회가 감독·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 필요"	대안 입법(개정안 재발의)	입법 비효율 및 낭비
	대법원 위헌심사 요청	심사결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당초 입법 단계부터 정교화	상황 변화시 대응 어려움
	행정입법 단계까지 사후관리 철저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침해 우려

여야 의원들은 원안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취지에 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국회로부터 위임입법의 권한을 받은 행정부가 '입법권'을 제약하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론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해당 부처가 상임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방안(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안으로는 △개정안을 다시 제출 △대법원 위헌명령심사 △입법 정교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등이 제시되고 있다.

19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말도 안되는 시행령이 나와서 이른바 '대응입법(개정안)'을 2~3번이나 직접 낸적이 있다"면서 "(상임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한 법안 취지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처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을 무력화하는데 대해서는 "무력화할게 아니라 필요하면 대안 법안을 마련해 법으로 의결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출신이자 상반기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정성호 의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행정부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도 안하고 이걸 파고드는 의원도 없다"면서 "시행령을 원안 취지에 맞게 고치는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되면 현재 위헌입법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재판절차가 길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입법절차를 통해 바꿔야 한다. 사실 국회에 입법된 상당수 법안은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재입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애초부터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때 내용을 정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에 법적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과도하게 정부에 위임입법 권한을 많이 준다"면서 "그래놓고 시행령이 문제가 있으니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유력한, 판사 출신의 홍일표 의원은 "입법부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입법을 했는데 행정부가 그에 반해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